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농지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68
----------	-----

제출일자 : 2000. // . .

제출자 : 영 주 시 장

1. 폐지이유

본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동법이 폐지(1995.12.29 법률 제 5077호)되고 새로이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제정1994.12.22 법률 제4823호) 제 50조부터 53조까지의 내용에 본 조례의 주요내용인 경지정리사업의 환지업무 등에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토지가격의 평정, 일시이용지 지정, 환지청산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1부

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발췌)

【농촌근대화촉진법】 - 폐지(1995. 12. 29. 법률 제 5077호)

제5조(농지개량사업에의 참가자격) ① 농지개량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나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농지개량사업에의 참여자격자로 인정한 자

②<생 략>

제7조(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농지개량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

제100조(부담금) ①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39조 내지 4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

제125조(일시이용지의 지정에 의한 손실보상등) ①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제12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26조(환지계획)①<생 략>

②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목·지적·등급·토성·수리·경사·온도 기타의 자연조건 및 이용조건을 참작하여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

야 하며 종전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이거나 공부상지목은 전답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전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라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132조 (몽리자총회의 의결) ①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등급결정은 각 지구의 몽리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각 지구의 몽리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총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몽리자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농어촌정비법】 - 제정('94. 12.22, 법률 제4823호)

제50조(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종전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지계획에 정하여진 환지는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의 다음 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된 토지는 당해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된 환지로 보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⑥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농업기반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51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

업시행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0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토지가격의 평정) 종전의 토지의 가격평정은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완료후에 조사·결정한다.

제53조(수해자총회) ①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결정, 환지구역 분할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해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수해자총수가 1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해자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②대의원회는 수해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30인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수해자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수해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검토보고서

1. 의안

- 의안번호 : 제168호
- 의안명 : 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해당부서 : 산업건설국 건설과

2. 제안이유

본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동법이 폐지(1995.12.29 법률 제5077호)되고 새로이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제정 1994.12.22 법률 제4823호)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내용에 본 조례의 주요내용인 경지정리사업의 환지업무 등의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토지가격의 평정, 일시이용의 지정, 환지청산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영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함.

4.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 현행조례는 당초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의 효율적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 동법이 폐지('95.12.29)되고 주요사항이 농어촌정비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00. 12.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호 섭